대 법 원

제 2 부

판 결

사 건 2021도2046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

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

상 고 인 피고인들

변 호 인 법무법인 혜민(피고인들을 위하여)

담당변호사 허범

원 심 판 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. 1. 25. 선고 2020노919 판결

판 결 선 고 2022. 4. 14.

주 문

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

이 유

상고이유(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)를 판단한다.

1.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는지 여부(상고이유 제1점)

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판단하였다. 원심판

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, 원심의 판단에 공소 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.

2. 수입신고의무자인지 여부(상고이유 제2점)

2015. 2. 3. 법률 제13201호로 제정된 구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(2019. 12. 3. 법률 제167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'구 수입식품법'이라고 한다)은 수입식품 증 가에 따른 수입식품 안전 확보를 위해서 영업자 구분관리, 해외제조업소 등록 및 현지 실사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입 품목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수입자 및 해외제조업소를 관리하여 안전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에 입법목적이 있고, 수입 식품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(제4조). 구 수입식품법은 '수입식 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'을 하려는 자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하는 '영업자'로 규정하고 있고(제2조 제5호, 제14조, 제15조), 구 수입식품법 제14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'영업자'의 영업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 수입식품법 시행령(2019. 5. 14. 대통령령 제29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조 제3호는 '수입식품등 인터넷 구 매 대행업'을 '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(컴퓨터 등과 정보통 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) 등으 로부터 수입식품등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영업'이라고 규정하고 있다. 구 수입식 품법상 '영업자'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 (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한다)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고(제20조 제1항), 그 위임에 따라 구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(2019. 6. 19. 총리령 제1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7조 제2항은 수입식품등 인터 넷 구매 대행업자가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'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 등의 수

입신고서'를 수입통관이 이루어지기 전에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

위와 같은 법령의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, 피고인들이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등록을 하고 대행업을 영위하는 이상 구 수입식품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수입신고를 하여야 하고, 해외 판매자로부터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었거나 수입통관절차에 국내 소비자의 '개인통관고유부호'가 사용되었더라도 위 대행업에 해당하는이상 수입신고가 필요하다.

한편, 관세법 및 동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던 구 「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」(2014. 6. 16. 관세청고시 제2014-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는 전자상거래의 유형을 구분하여 수입화주 등을 정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유형 구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고, 피고인들이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15. 11. 27. 선고 2014두2270 판결은 위 고시 시행당시 '당해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 확정 기준'에 관한 것이었다. 그러나 위 고시의전자상거래 유형 구분에 관한 규정들은 전자상거래 유형이 지속적으로 다변화되어 유형 구분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4. 6. 16. 위 고시가 개정되면서 모두 삭제되었는바, 위 폐지된 고시 및 대법원판결의 법리는 그 후 시행된 구 수입식품법 위반으로기소된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.

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.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,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한계를 벗어나거나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

잘못이 없다.

2	겨	로
υ.	~근	T

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	대법관	천대엽
	대법관	조재연
ス ス1	નો મો ગો	поλ
주 심	대법관	민유숙
	대법관	이동원